충남 마을기업 진입 안내

충청남도 Chungcheongnam-do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CHUNGNAM SOCIAL ECONOMY CENTER

CONTENTS

① 마을기업이란? ····· 04

② 마을기업의 유형 ····· 05

③ 마을기업 지정 신청자격 및 절차 ····· 06

④ 마을기업 요건 ····· 07

⑤ 마을기업 지원 혜택 ····· 11

⑥ Q&A ····· 13

⑦ 참고 ····· 15

01
마을기업이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설립 · 운영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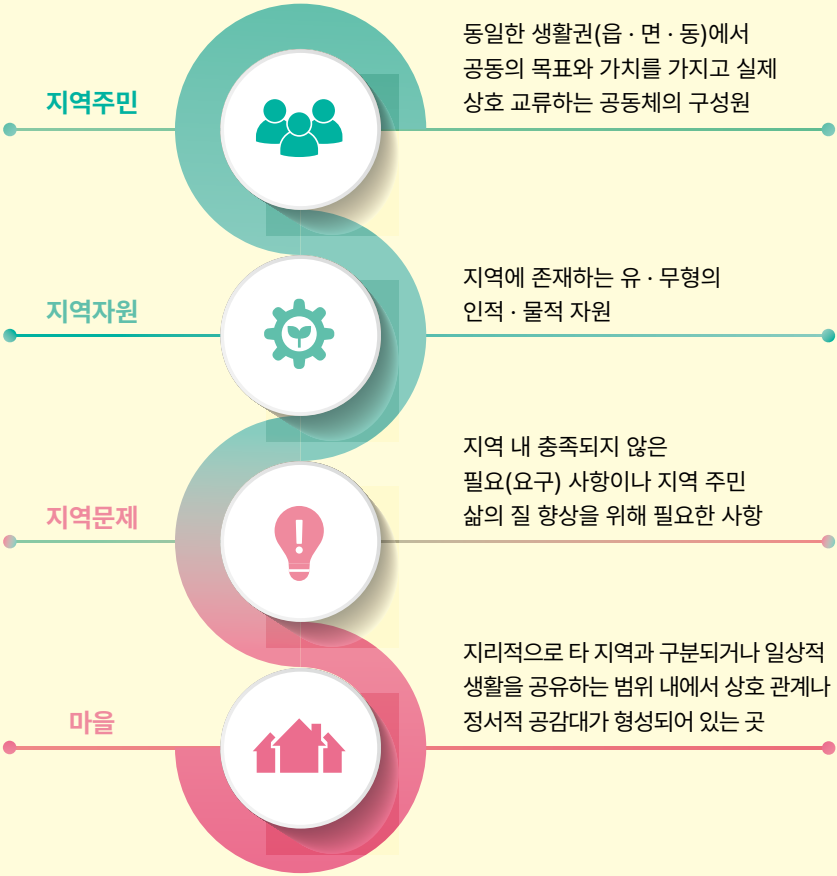

02
마을기업의 유형

성장단계에 따른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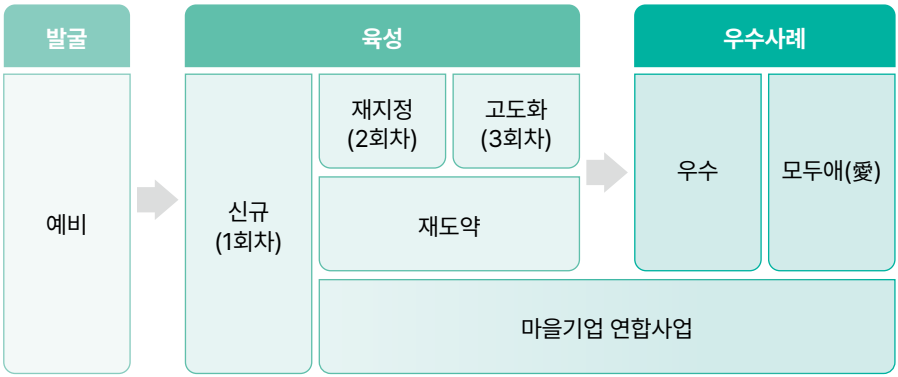

* 연도별 예산, 여건 등에 따라 지원 내용(지정, 지원금 등)이 변경되거나 진행되지 않을 수 있음.

사업 성격에 따른 유형

지역자원활용형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재화 · 서비스를 생산 · 판매하는 기업

※ (예) 지역특산물 가공, 관광 · 체험, 지역 먹거리 유통(로컬푸드), 국가 유산을 활용한 관리 · 전시 · 체험 등

사회서비스제공형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교육 · 복지 등을 제공하는 기업

※ (예) 노인돌봄 및 서로돌봄, 공동육아, 방과후학교, 주거복지 등

마을관리형

마을자산 운영, 지역재생 등 마을 공동의 이익이나 마을 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이나 다른 마을기업을 지원하는 기업

※ (예) 마을주차장 운영, 도시재생사업 수행 등

* 지역자원활용형 : 사업계획서에 유 · 무형의 인적 · 물적 지역자원 활용계획 반영

* 사회서비스제공형 / 마을관리형 : 정관, 사업계획서 등에 사회서비스 제공 · 마을관리 등을 주된 사업으로 정하고, 사업비의 50% 이상을 해당 분야에 편성

03
마을기업 지정 신청자격 및 절차

예비마을기업

- 마을 또는 단체(5인 이상 참여하는 非법인 공동체) 등도 가능
  * 단, 약정 체결 후 2개월 이내 법인을 설립해야 함.
- 마을기업 지정 요건을 참고하여 광역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따라 광역자치단체별 심사 · 지정
- 지정기간 : 약정 체결한 날부터 2년
  ※ 자치단체별 재심사 · 지정으로 1회 연장 가능, 연장 기간은 최대 2년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가 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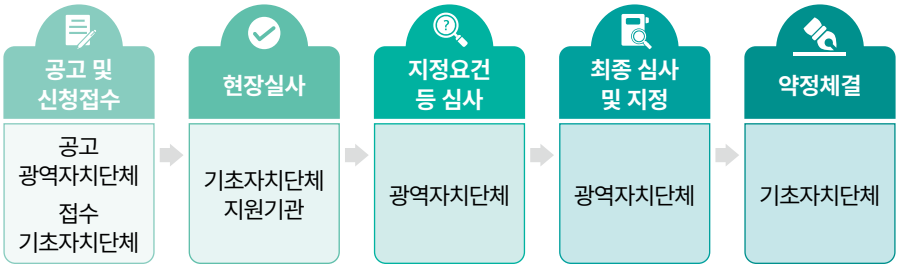

마을기업(1 ~ 3회차)

- 마을기업 지정요건을 충족한 기업
  * 지정요건 : 안내 책자 7P ~ 10P 참고
- 광역 심사 전 회원 5인 이상(대표자 필참) 필수교육을 이수한 기업
  * 단계별 필수교육 : 안내 책자 15P 참고
- 공고일 기준으로 최소 5개월 이전에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한 기업(신규)
  * 운영실적 확인 : 기업의 법인 매출액, 월별 추진실적 등 실질적으로 운영된 사항을 입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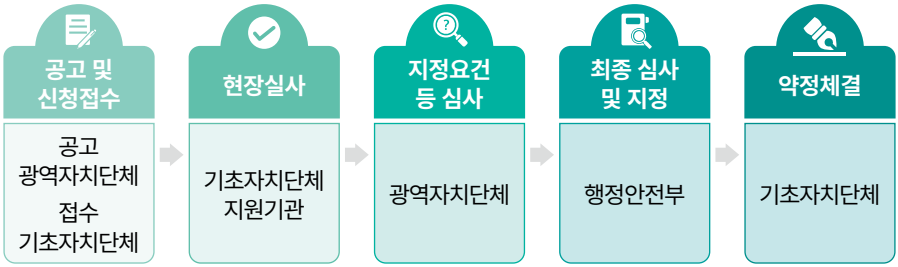

04

마을기업 요건

지역성

마을기업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고 동일한 생활권(읍 · 면 · 동)을 기반으로 거주하는 주민들이 참여하여야 함.

지정요건

1	• 지역 내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을 기반으로 설립 · 운영되어야 함.
2	• 지역에 소재하는 자원(유 · 무형의 인적 · 물적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하여야 함.
3	• 지역사회 문제와 지역주민의 욕구와 연계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4	•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기업이어야 함. - 지역주민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해당 지역에 등록된 주민이거나 해당 지역에 소재한 직장의 근로자이여야 함. - 마을기업 회원은 최소 5인 이상의 지역주민이 포함되어야 하며 지역주민이 전체 회원 중 70% 이상 포함되어야 함.

* 지역의 범위(거주지 또는 직장주소 기준)

• '읍 · 면 · 동'을 기본으로 함.(행정동 기준, 분동될 경우 지정 시점의 범위 적용)

• 설립목적이나 주민생활권 등을 이유로 범위 확대가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시 · 군 · 구'까지 확대하고 주민(시 · 군 · 구 기준)이 회원의 80% 이상 포함되어야 함.
- 단, '인구감소지역'은 주민(시 · 군 · 구 기준)이 회원의 70% 이상 포함되어야 함.
- '21년 이전 마을기업이 지정된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마을기업을 유지 · 운영할 수 있으나 마을기업 심사 시에는 새로운 시행지침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지역주민 여부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초본의 거주지, 재직증명서의 직장주소 등을 확인

운영요건

1	• 마을기업은 지역 내에서 생산 · 소비 · 교환 · 분배가 이루어지는 지역순환경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2	•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함.(70% 이상 지역주민 고용 권장)

공동체성

공동체가 주도하고 출자하여 기업을 설립하여야 하며, 기업 설립과 운영에 공동체가 참여하고 결정하여야 함.

지정요건

1	• 마을기업의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법인에 출자하여야 함. - 마을기업 회원(출자자)과 법인 회원(출자자)이 동일해야 함. - 마을기업 출자금과 법인 출자금 총액이 같아야 함. - 마을기업은 법인 전체를 지정하는 것이 원칙
2	• 마을기업 설립 시 회원(출자자)은 최소 5인 이상의 지역주민이 포함되어야 함. - 마을규모, 지역범위, 사업내용 등에 비추어 공동체성을 보장할 만큼의 충분한 수의 회원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함. ※ 회원 10인 이상 출자하여 공동체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권장
3	• 마을기업 회원은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체 일원으로서 마을기업의 계획과 운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야 함.
4	• 마을기업은 사업계획 및 운영 방침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스스로 결정하여야 함.
5	• 마을기업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모든 회원(출자자)은 출자금액을 최대한 공평(균등)하게 출자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이고,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은 50% 이하여야 함. * 특수관계인 :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형제 · 자매

운영요건

1	• 마을기업 운영을 통해 지속적으로 회원(출자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회원간 출자금 비율과 지역주민 비율 등을 마을기업 지정요건에 맞게 유지하여야 함.
2	• 마을기업 운영과정에서 회원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투명성 및 공정성, 정보와 의사결정의 민주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공공성

마을기업은 지역문제 해결하고 지역사회에 공헌 및 상생하여야 함.

지정요건

1	• 마을기업 회원은 마을기업 설립 · 운영 과정에서 개인의 이익보다는 마을기업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마을기업은 마을과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하고 상생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2	• 마을기업은 지역의 필요와 욕구 충족, 일자리 및 소득 창출, 주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3	• 마을기업은 기업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사회에 공헌하도록 노력해야 함.
4	• 마을기업의 설립과정에 지역주민 또는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을 참여시키고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주민총회, 주민자치회 등 주민대표성이 있는 조직을 통해 마을기업 설립 · 운영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 권장
5	• 마을기업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여야 함. - 마을기업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하거나 선거홍보에 마을기업 명칭을 노출할 수 없음. - 대표자가 후보인 경우라도 마을기업 명칭을 노출하거나 선거에 활용할 수 없음.

운영요건

1	• 마을기업은 일자리의 질* 및 고용의 형평성**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 * 일자리의 질 : 근로자 임금수준 및 근로자 역량강화 노력 등 ** 고용의 형평성 : 다양한 계층 · 연령 · 성별 등 마을기업의 설립목적 및 가치에 부합하는 고용형태 확대
2	• 마을기업은 사업계획서 상의 지역사회 공헌활동 또는 이에 상응하는 활동을 반드시 이행해야 함. - 지역사회 공헌활동은 사회적 환원 및 사업내용 · 계획과의 연계하여 진행해야 함.

기업성

마을기업은 지속 가능한 수익구조를 갖추어 정부 및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자립 운영할 수 있어야 함.

지정요건

1	• 재화와 서비스 공급 등의 수익사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경제조직이어야 함.
2	• 마을기업의 사업은 기업으로서 경쟁력이 있어야 함. - 차별화된 사업모델이나 관련 사업수행 실적, 인적 · 기술적 역량* 등 마을기업 계획과 관련된 사업 역량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함. * 회원의 경력 · 경험, 사업에 필요한 인 · 허가, 자격증 보유
3	• 마을기업의 조직 형태는 법인이어야 함. - 광역자치단체 공고일 기준으로 최소 5개월 이전에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한 경우만 신청 가능(단, 예비마을기업으로 약정 체결한 후에 5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운영요건

1	• 마을기업은 지속 가능하여야 함. - 다음 연도 사업 운영이나 장기적인 사업확장을 위해 순이익*의 30% 이상을 적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손익계산서 상 법인세 차감 이후의 금액
2	• 마을기업 사업은 마을기업 대표 또는 이사들의 개인적인 영리활동과는 분리되는 별도의 사업이어야 함.
3	• 2012년 이전에 비(非)법인으로 지정된 마을기업의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법인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함.(법인으로 전환 후 보조금사업에 지원 가능)

05

마을기업 지원 혜택

※ 연도별 예산, 여건 등에 따라 지원 내용(지정, 지원금 등)이 변경되거나 진행되지 않을 수 있음.

사업비 지원

구분	사업비(보조금)	자부담
예비	1천만 원 이상 (인구감소지역은 2천만 원 이상)	사업비(보조금)의 20% 이상 (청년마을 · 인구감소지역은 10% 이상, 중복혜택 없음)
1회차 (신규)	최대 5천만 원	
2회차 (재지정)	최대 3천만 원	
3회차 (고도화)	최대 2천만 원	

※ 충청남도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충청남도 (9)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 (21년 10월 기준, 5년 단위 지정)

자립 지원

맞춤형 육성지원

맞춤형 육성지원

재도약 지원사업

마중물 사업비 1천만 원 지원
재지정 마을기업 선정 배려

마을기업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고 전문적인 컨설팅을 통하여 차별화 및 재도약이 필요한 마을기업을 발굴하여 지원

대상

- 운영실적이 저조한 기업, 성과가 좋으나 재도약이 필요한 기업

마을기업 연합사업

연합체가 제품 개발 · 기반 설비 확충 · 홍보 · 마케팅 등을 위한 사업비 최대 3억 원 지원

마을기업의 지속적 성장과 경쟁력 증진을 위하여 동일 지역 내 마을기업 간(3개 이상) 주요 유형의 연합사업 발굴 · 지원

대상

- 기초지자체 마을기업 3개 이상이 참여한 연합체

인센티브 사업

인센티브 사업

우수마을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선도적인 마을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사업비 최대 7,000만 원 지원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 문제 해결 등에 기여한 마을기업으로 특히, 공동체적 가치를 실현한 기업 발굴 · 확산

대상

- 마을기업 4대 요건을 충족하고 우수한 실적이 있는 마을기업으로서 2회차(재지정) 사업비를 지원받아 정산을 완료한 마을기업
- 신규 지정 후 2년을 경과 한 마을기업

모두애(愛) 마을기업

'간판 마을기업'으로 성장토록 제품 개발, 기반 시설 확충 등을 위한 인센티브 사업비 최대 1억 원 지원

높은 매출과 브랜드 가치를 보유하고 기업성 및 지속가능성을 입증하는 마을기업을 발굴

대상

- 최근 3년간 매출액이 평균 3억 원 이상인 마을기업으로서 3회차(고도화) 사업비를 지원 받아 정산을 완료한 마을기업
- 신규 지정 후 3년을 경과 한 마을기업

06
Q&A

Q 청년마을기업이 무엇인가요?

청년들이 주도하여 설립 · 운영하는 마을기업입니다.

- 「청년기본법」의 청년의 정의를 따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며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음.
- 자부담 경감(20% ▶ 10%), 지역주민비율 완화(70% ▶ 50%), 심사 가점(최대 3점)
- 지역주민 5인 이상 포함하고, 지역주민비율(50% 이상)과 청년회원비(30% ~ 50% 이상)를 충족하여야 함.
- 청년회원비율은 기초자치단체의 청년인구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30% ~ 50%)

A

< 기초자치단체의 청년인구비율에 따른 청년회원비율 기준 >

- 총 인구의 청년인구비율(20%) 초과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청년회원비율 50% 적용, 미달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인구비율별 차등 완화

기초자치단체 청년인구비율*	15% 미만	15% ~ 20% 이하	20% 초과
청년회원비율	30%	40%	50%

* 산정 기준 : 신청연도의 직전년도 말일(행안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jumin.mois.go.kr 참고)
예) '26년 신청 시, '25. 12. 31. 기준 적용

Q 마을기업 지정 신청 시, 지역의 범위는 꼭 읍 · 면 · 동이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지역 기준은 읍 · 면 · 동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 특성 또는 지리적 여건상 필요한 경우 시 · 군 · 구 단위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 기준을 확대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관련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확대 적용 시에는 주민회원 비율 80%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 신규 마을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예비마을기업 지정을 꼭 받아야 하나요?

A 신규 마을기업 지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예비마을기업 단계를 생략하고 마을기업으로 바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Q 같은 읍에 거주하는 주민 70%가 모였는데 주 사업장 소재지를 같은 시 · 군 안에 있는 다른 읍 · 면 · 동에 해도 되나요?

A 불가합니다. 지역 내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을 기반으로 설립 · 운영 되어야 하며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기업이어야 함으로 사업장과 지역주민의 지역은 동일해야 합니다.

Q 법인 출자자가 5인이고, 출자하지 않은 주민들도 마을기업에서 하는 사업에 참여 예정인데 마을기업 회원으로 인정되나요?

A 법인출자자 = 마을기업 회원이므로 법인에 출자하지 않은 주민들은 마을기업 회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 마을기업 회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가족단위로 5명이 모였는데 (부부1, 부부1의 자, 부부2) 요건이 충족되나요?

A 특정 1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이 50% 이하라면 충족됩니다. 다만, 지역 공동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마을단위 기업이란 관점에서 2개 가구만이 느끼는 문제는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며, 마을 전체 가구 중 2개 가구의 참여가 공동의 문제해결로 보기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을의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해결해 나갈 지역주민을 추가 모집하여 함께 참여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07
참고

필수교육

- 신규교육 : 1회차(신규) 마을기업
- 전문교육 : 2회차(재지정) · 3회차(고도화) · 우수 및 모두애(愛), 연합체 마을기업
  * (교육이수효력) 교육 마지막 날로부터 만 2년(3회차(고도화) · 우수 및 모두애(愛), 연합체 마을기업은 만 1년)
  * 광역자치단체 심사일(우수 및 모두애(愛), 연합체 마을기업은 행안부 추천일) 기준 이수 효력이 유지되어야 함

구분(교육시간)	이수인원	교육시기	교육내용
① 신규 교육(17시간)			
입문 (7시간)	회원 5인 이상 (대표자 필참)	광역 심사 전	• 보조금 사용 주의사항 • 마을기업 및 공동체 이해 • 마을자원 발굴 •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등
기초 (7시간)	회원 5인 이상 (대표자 필참)	지정 후 ~ 보조금 교부 전	• 공동체 관리, 민주적 법인운영 방안 • 마케팅 및 판로 등 • 우수사례 공유 · 견학 • 마을기업간 네트워크 • 선배마을기업과의 교류 · 소통
심화 (3시간)	회원 5인 이상 (대표자 필참)		• 경영관리(재무 · 회계 · 인사 · 성과 관리 등) • 보조금 사용 주의사항
② 전문 교육(6시간)			
기본 (4시간)	회원 5인 이상 (대표자 필참)	광역 심사 전	• 기업의 전문성 강화 교육(홍보, 마케팅, 브랜드 관리, 서비스, 기획, 개발 등) • 마을기업 · 보조금 제도 등 주요 변경사항 • 사업계획서 작성
심화 (2시간)	회원 3인 이상 (대표자 및 실무 책임자 필참)	지정 후 ~ 보조금 교부 전	• 보조금 사용 주의사항

마을기업(1 ~ 3차) 지정심사 기준

• 1회차(신규) 마을기업

심사항목	배점	구분	심사지표
공동체성	30	정량	• 출자자수 : (상) 20인이상 (중) 10 ~ 19인, (하) 5 ~ 9인 • 1인 최대 지분율, 특수관계인 지분율 • 입문교육 이수
		정성	• 마을만들기 등 기존의 공동체 활동 실적 • 회원의 가치공유 여부 및 자발적 참여 정도 • 마을기업 신청과정에서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 및 가능성 • 향후 회원 확보 가능성 및 의지
공공성	20	정량	• 설립목적에 지역문제 해결, 지역사회 공헌 등 포함 여부 • 설립과정에서 지역주민이나 지역 내 이해당사자 참여 여부 (주민자치회 등 대표성 있는 조직의 참여 시 우대)
		정성	• 지역사회 전체 이익실현 및 상생 노력 여부 • 지역사회 공헌 활동 노력 및 실현가능성 • 일자리의 질 및 고용 형평성 확대 노력
지역성	20	정량	• 마을기업 회원의 지역주민 비율 • 사업장의 지역내 소재 여부 • 지역 소재 자원 활용 정도
		정성	• 지역 주민의 사업 주도 정도 • 지역과 관련된 사업 추진 여부 (지역자원 활용, 지역주민 사회서비스 제공, 마을 관리 등)
기업성	20	정량	• 법인 여부 및 수익사업 여부
		정성	• 사업모델의 차별성, 관련 사업수행 실적 • 마을기업의 사업 분야와 관련된 특허 · HACCP 유무, 관련 전문가 보유(자격증 보유자, 관련 사업수행 유경험자 등) 등 • 상품 및 서비스의 시장경쟁력 • 판매가능성(판매계획 및 마케팅 전략) • 보조금 종료 후 자립 운영 가능성
사업 계획의 적정성	10	정성	• 목표설정의 타당성, 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 단가 산출의 적정성, 연내 집행 가능성
가점	최대 5	3 (택1)	• 예비마을기업을 거친 경우(중도포기 · 취소한 경우 제외) • 공동체 사업으로 육성 · 지원된 공동체가 해당 공동체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대상사업 : 참고) • 상용근로자수 : (3) 5인이상 (2) 4 ~ 2인, (1) 1인
		2 (택1)	• 여성이 마을기업 대표로 참여하는 경우 • 청년마을기업의 청년 출자자 비율(30 ~ 50%)을 충족한 경우
		※ 가점분야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분야별 1개만 선택해서 신청 ※ 관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필수	

* 가점여부에 대한 판단은 광역자치단체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가점 대상 공동체 사업

구분	소관	사업명
1	국조실	생활SOC 복합화 사업
2	교육부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사업
3	국토부	마을관리협동조합 사업
4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5	국토부	도시재생 예비사업
6	농식품부	농촌유휴시설 활용 창업지원 사업
7	농식품부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8	농식품부	농산어촌지역개발사업
9	농식품부	귀농귀촌 지원사업(귀촌인 농산업 창업교육 포함)
10	문체부	관광두레 사업
11	복지부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사업
12	복지부	사회적경제 연계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활성화
13	복지부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
14	산림청	산림일자리발전소 사업
15	산림청	산촌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16	여가부	돌봄공동체 지원사업
17	해수부	자율어업공동체 선정 및 육성
18	해수부	어촌뉴딜300
19	환경부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20	국가유산청	우리고장 국가유산(무형유산 포함) 활용 사업
21	국가유산청	세계유산 축전 및 활용 프로그램 사업
22	행안부	지역특화형 마을기업 육성 사업
23	행안부	정보화마을
24	행안부	청년공동체 육성 사업
25	행안부	주민자치회 관련 사업 (주민자치회가 마을기업 설립 · 운영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법인 포함)
26	기타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주민 삶의 질 향상 등 지역 내의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부처나 자치단체에서 공동체를 육성 또는 지원하는 사업 (가점 인정 여부는 광역자치단체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2회차(재지정) 마을기업

심사항목	배점	심사지표
공동체성	15	• 마을기업 취지에 맞게 회원이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 (설립 당시 회원 유지 여부, 회원 규모, 출자액 증가 정도 등) • 공동체 활동 실적의 적절성 • 마을기업 설립 · 운영상 민주적 의사결정 · 의견수렴 노력 • 향후 회원 확보 가능성 및 의지 • 전문교육 이수
공공성	25	• 당초 사업계획서 상의 사회공헌활동 이행 여부 • 사회공헌활동의 실적(정량, 정성적 성과) • 지역사회 전체 이익실현 및 상생 노력 •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 · 유지 노력
지역성	15	• 마을기업 취지에 맞게 지역 기반의 운영 여부 또는 정도 (지역내 사업장 소재, 지역자원 활용 정도, 지역주민비율) • 마을기업 활동 실적의 지역 연관성 • 사업 계획과 지역 문제와의 연관성 • 지역순환경제 구축 가능성
기업성	25	• 사업수행 실적(또는 마을기업 회원의 관련 경력 · 역량 보유 유무) • 마을기업의 지속 가능성(매출 및 이익 등) • 발전가능성(새로운 사업계획 또는 한 단계 발전하는 사업계획인지) • 향후 사업 계획의 충실성 • 지속가능성(사업준비금 등 적립 노력)
사업 관리 · 계획의 적정성	10	• 사업 관리의 충실성(회계 관리, 지도 · 점검 협조 등 포함) • 계획대비 성과 달성 정도, 계획 이행의 충실성(보조금 집행실적 포함) • 목표설정의 타당성, 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 단가 산출의 적정성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10	• 지역일자리 창출 성과 및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 가능성 • 일자리 질 및 고용 형평성 확대 노력
가점	3	• 여성이 마을기업 대표로 참여하는 경우 • 청년마을기업의 청년 출자자 비율(30 ~ 50%)을 충족한 경우 • 상용근로자수 : (3) 5인이상 (2) 4 ~ 2인, (1) 1인
		※ 가점분야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신청 시 1가지 분야만 선택해서 신청 ※ 관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필수

* 가점여부에 대한 판단은 광역자치단체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3회차(고도화) 마을기업

심사항목	배점	심사지표
공동체성	10	• 마을기업 취지에 맞게 회원이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 (설립 당시 회원 유지 여부, 회원 규모, 출자액 증가 정도 등) • 공동체 활동 실적의 적절성 • 마을기업 설립 · 운영상 민주적 의사결정 · 의견수렴 노력 • 향후 회원 확보 가능성 및 의지
공공성	30	• 당초 사업계획서 상의 사회공헌활동 이행 여부 • 사회공헌활동의 실적(정량, 정성적 성과) • 지역사회 전체 이익실현 및 상생 노력 •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 · 유지 노력
지역성	10	• 마을기업 취지에 맞게 지역 기반의 운영 여부 또는 정도 (지역내 사업장 소재, 지역자원 활용 정도, 지역주민비율) • 마을기업 활동 실적의 지역 연관성 • 사업 계획과 지역 문제와의 연관성 • 지역순환경제 구축 가능성
기업성	30	• 사업수행 실적(또는 마을기업 회원의 관련 경력 · 역량 보유 유무) • 마을기업의 지속 가능성(매출 및 이익 등) • 발전가능성(새로운 사업계획 또는 한 단계 발전하는 사업계획인지) • 향후 사업 계획의 충실성 • 지속가능성(사업준비금 등 적립 노력)
사업계획의 적정성 (실적 포함)	10	• 계획대비 성과 달성 정도, 계획 이행의 충실성(보조금 집행실적 포함) • 사업 관리의 성실성(회계 관리, 지도 · 점검 협조 등 포함) • 목표설정의 타당성, 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 단가 산출의 적정성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10	• 지역일자리 창출 성과 및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 가능성 • 일자리 질 및 고용 형평성 확대 노력
가점	3	• 여성이 마을기업 대표로 참여하는 경우 • 청년마을기업의 청년 출자자 비율(30 ~ 50%)을 충족한 경우 • 상용근로자수 : (3) 5인이상 (2) 4 ~ 2인, (1) 1인
		※ 가점분야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신청 시 1가지 분야만 선택해서 신청 ※ 관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필수

* 가점여부에 대한 판단은 광역자치단체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충남 마을기업 진입 안내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CHUNGNAM SOCIAL ECONOMY CENTER

마을기업 문의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마을기업팀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칠갑산로1길 31 충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1층

Tel 041-456-8134 **E-mail** cb@cnse.kr **Homepage** www.cnse.kr

* 마을기업 안내가 필요한 공동체, 기업 대상 내방상담의 날 운영
* 마을기업 안내가 필요한 공동체, 기업 대상 방문교육 및 상담 진행